

2026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시 2026년 6월 24일(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신 현 송 의 장(총재)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황 건 일 위 원
김 종 화 위 원
이 수 형 위 원
김 진 일 위 원
4. 결석위원 장 용 성 위 원
5. 참 여 자 김 언 성 감사 권 민 수 부총재보
박 종 우 부총재보 장 정 수 부총재보
김 제 현 부총재보 이 지 호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임 광 규 금융안정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최 용 훈 금융시장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정 희 섭 외자운용원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조 용 범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민 식 거시전망부장 권 도 근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1호 -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의 작성내용과 함께 위원협의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는 각 부문별 점검과 함께, 현안 분석으로 시장금리 상승시 영향을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 위주로 점검한 내용과, 비은행의 잠재 리스크 및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한 내용을 수록하였음.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를 짚어보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분석자료도 담았음.

참고 BOX로는 주택 소유 유형별로 차입가계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기업부문의 업종별 차별화 정도를 진단하였음. 그 밖에 상업용 부동산, 가상자산, 은행 부실 여신, 외국인 국내 증권자금 등 주요 이슈들과 보다 긴 시계에서의 ESG 공시 제도 관련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음.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세 가지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둘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한 자산투자 증가, 취약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음.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대내외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점검하면서도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시 정부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

다음으로 지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부 위원은 최근 불확실성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보고서가 지향하는 조기경보(early-warning) 기능을 다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평가와 리스크 요인들을 충실히 기술할 것을 당부하였음. 다만,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많은 위원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측면과 금리인상의 효과가 균형감 있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다른 일부 위원은 FOMC 결정과 중동협상 타결 후 상황 변화 등도 적절히 반영하고 금융불균형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면서도 금리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잘 대비하자는 취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환율이 변동성뿐 아니라 높은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고, 주택시장에서의 기대심리가 다시 확산되면서 임금·성과급

등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 가능성이 커진 점을 관련 파트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할 것이지만 최근 빚투가 늘어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보다 부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다른 위원은 취약부문의 부실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 대응책으로 재정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사전적인 대출심사 강화와 구조조정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안) (생략)